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7월호

발행일 | 2026년 7월 31일

In Focus

- + 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코스파·코스닥 상장사 감리 10년·5년 주기로 단축 등 논의 [\(바로가기\)](#)
- + 금감원, 상장법인 등의 FY26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 이슈 사전예고 [\(바로가기\)](#)
-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확정...연결 10조원 이상 상장사 FY27 정보 법정공시 시작으로 2년 후엔 제3자 인증도 의무화 [\(바로가기\)](#)
- +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국제기구 AI 기능 통합 협력 위한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 예정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감리 10년·5년 주기로 단축 등 논의	4
	▪ 금감원, 상장법인 등의 FY26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5
	▪ 한공회, 비상장법인의 FY26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6
	▪ 금감원, FY25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공개	8
	▪ 기준원, '25년 하반기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10
	2. 자본시장	
	▪ 금융위·거래소,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위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세부기준 마련	11
	▪ 금융위,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의무 모든 상장사로 확대...6월 30일 부터 시행	13
	3. ESG·지속가능성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확정...연결 10조원 이상 상장사 FY27 정보 법정공시 시작으로 2년 후엔 제3자 인증도 의무화	15
	4. 기술·디지털	
	▪ 금융위, 금융권 AI 전환 추진 가속화...개정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발표	17
	▪ 금융위, 금융회사 AI 보안테스트 중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 면책 방침	19

02 | 해외 업데이트 21

1. ESG·지속가능성

-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정 전면 폐지 제안..."SEC 법정 권한 벗어나고 비용 대비 효익 낮아" 22

2. 기술·디지털

-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국제기구 AI 기능 통합·협력 위한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 예정 23
- 영국,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이르면 '27년 시행...SNS 아닌 서비스도 유해 기능은 별도 규제 25

03 | 주목할 간행물 27

- EY: Quantum Business Readiness Report 2026 28
- IBM: Quantum is coming 28

01

국내 업데이트

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감리 10년·5년 주기로 단축 등 논의 In Focus

6월 24일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해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감리 수단을 고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함. 이번 세미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회계학회(주최), 국회, 금융위원회, 기업계 및 회계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행 회계 감리체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배경

- 올해 3월 금감원은 '26년도 회계 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과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힘. (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금감원, '26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분식회계 무관용 원칙 확립할 것"" 참고)
- 기본 방향성으로는 크게 ▲분식회계 무관용 원칙 확립 ▲회계감독 프로세스 선진화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이 중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고위험군 집중 감시 및 엄정 감리, 기업 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세미나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회계 오류 및 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고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현재	개선 방향
감리 주기	상장사 평균 20년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감리 전담 부서	2개 부서	4개 부서 (2개 부서 추가)
감리 수단	임의조사	심사: 임의조사 유지 감리: 강제 조사수단(계좌추적권) 일부 강화
상장폐지로의 연계	감리 결과 연계 미흡	감리 결과를 연계한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이러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 등 개선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¹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도 언급되었음. 한편, 주기가 급격하게 단축되었을 때 기업이 느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즉시 퇴출과 같이 처벌을 강화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방어권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 세부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및 제재 선진화 착수...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논의" 참고)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회계 심사·감리 인력 확충, 감리 수단 고도화 등의 제도적 개선사항은 신속하게 검토·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

¹ 감리 대상 기업을 위험 기반으로 다층 구분하고, 각 구분 그룹별로 심사주기를 차등화

금감원, 상장법인 등의 FY26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In Focus

6월 22일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의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 2027년 중 심사를 실시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4대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선정해 [예고](#)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이슈	선정 배경	유의사항	대상 업종	대상 기업 선정 기준
국외 매출·매출채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해외시장 접근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외 매출 관련 위험 증가	국외 매출의 인도조건 차이와 고객 신용위험 평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른 적정한 수익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인식에 유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 ¹	국외 매출 규모 등 고려
재고자산 평가손실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로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재고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해외 종속법인 보유 재고, 신성장 산업에서 저가 수주 후 기술 구현 실패 등의 경우, 저가법에 따른 적정한 재고자산 평가에 유의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현황 등 고려
투자 부동산	투자부동산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그간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바 없음	투자부동산 인식, 측정 및 관련 공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전 업종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 고려
충당부채·우발부채	시장 변화, 기술 발전 등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충당부채·우발부채 인식·공시 여부 및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손실부담계약, 보증 등 금융거래, 소송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측정하고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	전 업종	충당부채 규모 및 변동 현황, 관련 공시 사항 등 고려

금감원은 20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

¹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한공회, 비상장법인의 FY26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6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 제외)의 202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이슈	선정 배경	유의사항	대상 업종 및 기업 선정 기준
장기공사 계약 (수주산업) 수익인식	진행기준¹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오류, 진행률 과대산정 및 매출 과대계상 등과 관련하여 지적사례 발생	- 진행기준 적용 여부 -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	건설업, 조선업에서 다음을 고려: - 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 영업이익과 영업 현금흐름의 관계 - 관련 주식 공시사항 등
지분법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오류, 지분법 적용 시 회계처리 오류 빈번 발생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한 경우: - 지분법 적용 대상 여부 검토 - 지분법 적용 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유무 및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등	- 자산 대비 유가증권·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 지주회사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 - 우발부채 공시를 간과하는 오류사례 빈번	-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 우발부채 주식공시 누락 가능성	- 충당부채의 변동성이 큰 회사 - 충당부채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 큰 회사 -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K-IFRS]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수행의무) 이행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 완성정도에 따라 공사 진행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회계이슈	선정 배경	유의사항	대상 업종 및 기업 선정 기준
특수 관계자 거래	-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그 거래 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 존재 - 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투자계약 시 투자자약정 내용이 복잡·다양해지는 추세 -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거래 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히 회계처리 및 공시되지 않는 경우 다수 발견	- 특수관계자 범위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회계처리 적정성 - 공시 요구사항 등	- 동종업종 평균 대비 금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 자산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 전환 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 고려

한공회는 2026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한공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및 전파를 강화할 방침임.



금감원, FY25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공개

6월 30일 금융감독원이 2025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무사항(13개 항목)과 비재무사항(4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결과를 발표함. 점검 결과, 금감원은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제재현황 등 투자자가 관심이 높은 중요 정보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힘.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재무사항 점검 결과

표	내용
점검 대상	'25년도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에서 기재 미흡이 확인된 회사 등 총 221사
점검 항목 (13개)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5개 항목)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3개 항목)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5개 항목)
주요 미흡항목	(재고자산 현황)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및 실사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정보만을 기재하고 감사인 입회 여부 등을 포함한 실사 내용¹을 미기재함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계정과목별 설정 내용, 변동 현황, 설정 방침,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기재함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 공시대상기간 내 회계감사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를 미기재함 - 감사보고서에는 강조사항 또는 핵심감사사항이 존재함에도 사업보고서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불일치함 -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표 누락 등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감원, '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도 사업보고서에 공시 요구" 참고)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결과 ▲감사인의 감사(검토) 항목을 각각 기재해야 함에도 두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함 -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금융회사²는 '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공시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실사일자,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감사인 등의 입회 여부, 장기체화재고 현황 등

²금융회사 이외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년부터 의무 적용

2.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점검 항목 (1)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점검 대상	'25년 말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1% 이상이고 전년도 자기주식 관련 공시 점검에서 기재 미흡이 확인된 회사 등 총 123사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자기주식보고서 이사회 승인 및 첨부 여부 등을 점검
주요 미흡항목	-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향후 검토 예정”, “필요시 공시 예정” 등 형식적 문구만 기재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보유 자기주식의 활용 계획, 소각 일정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투자자가 향후 자본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움

점검 항목 (2) 자기주식 소각 현황 및 취득·처분 등 이행 현황

점검 대상	'25년 중 자기주식 소각 결정을 공시한 234사
주요 미흡항목	-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 현황 누락 - 이행률 70% 미만임에도 미이행 사유 누락 또는 미흡 기재

점검 항목 (3) 중대재해 발생 사실

점검 대상	고용노동부 공고 또는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24사
주요 미흡항목	-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기재 - 중대재해 관련 회사의 조치사항 및 전망 간략 기재

점검 항목 (4) 제재 현황

점검 대상	공시대상기간('23~'25년) 중 공시위반 혐의로 조치받은 83사
주요 미흡항목	- 제재조치 사실 누락 -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임직원과 회사에 대한 제재를 구분하지 않음 -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근거 법조문,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방지 대책을 미기재하거나 미흡 기재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기업에 개별 안내하고, 기재누락·부실기재가 다수 확인된 기업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보완한 후 자진해서 다시 공시하도록 지도하는 등 공시 품질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힘.

기준원, '25년 하반기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6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이 2025년 하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요약 10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이번에 공개된 신속 질의회신에는 K-IFRS 9건, 일반기업회계기준 1건이 포함되어 있음.

K-IFRS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목록은 다음과 같음.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1	2025. 07. 07.	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
2	2025. 07. 23.	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 분류
3	2025. 08. 01.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
4	2025. 08. 10.	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5	2025. 10. 0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환사채 소멸 시 회계처리
6	2025. 10. 17.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의 당기손익 인식시기
7	2025. 12. 12.	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
8	2025. 12. 23.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9	2025. 12. 31.	비금융변수와 금융변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파생상품 정의 충족 여부

아울러,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목록은 다음과 같음.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1	2025.12.02.	비외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의 선택과 후속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거래소,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위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세부기준 마련

7월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이는 상장사가 비상장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하는 중복상장의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조치임.

배경

- 기존 거래소 상장규정은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두고 있었음.
 - 이로 인해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가 보유하던 기업가치가 디스카운트될 수 있다는 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회사 이사회와 지배주주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옴.
- 이에 따라 지난 3월 금융위와 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통해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발표**함. 주주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중복상장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도록 함. 또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상장을 허용하기로 함.
- 이번 세부기준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개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기반으로 홍콩·대만 등 해외 중복상장 규율 등 글로벌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됨.

이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①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②엄격한 상장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것임. 이 기준은 일반 상장기준에 더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특례 심사기준으로, 상장된 모회사의 종속회사¹나 계열회사²가 상장하는 경우 적용됨.



먼저, 모회사 이사회에는 중복상장에 대해 간접적 영향력³이 있고,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으며, 모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등

²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등. 수직적 지배관계 판단은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손자·증손자 등)를 기준으로 함.

³ 모회사는 정관개정, 이사선임 등을 위해 자회사에 의결권 행사 가능. 예) 모회사가 자회사 주주총회를 통해 "신주발행, 상장 등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관 개정 시, 자회사 IPO-상장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모회사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변경 가능

①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1)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 추가 디스카운트 가능성, 모회사 지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주영향 평가서 작성 후 결의

2) 주주 보호 방안 마련

- 주주영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주 보호방안 마련

3)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 기업설명회(IR), 설문조사 등을 통해 1), 2) 단계 의무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을 반영

4) 최종 찬반결의 및 자회사 통지

- 주주영향 평가 결과, 주주 보호방안, 주주소통 및 주주동의 여부 확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찬반결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지

5) 관련 정보의 공시

- 1)~4) 단계 의무 이행 사실 공시
- 주주총회 등 직접적인 주주 동의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함께 공시

특히 이와 같은 절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영향 평가 및 주주 보호방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 이사회 최종 찬반 결의를 진행함에 앞서 이사회 내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에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함.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독립이사로 하거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 또는 독립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중복상장 시 지배회사의 지나친 관여로 인해 피지배기업의 계속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엄격한 자회사 상장심사 기준을 정립함.

② 자회사 상장 심사 기준

- 영업 독립성 (현행 일반 질적심사기준상 영업의 독립성 기준에 추가하여 고려함)
 - ▲모회사와의 영업 유사성 여부 ▲영업 독자성 여부 ▲모회사에 대한 영업 의존도를 검토
- 경영 독립성 (현행 일반 질적심사기준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준에 추가하여 고려함)
 - ▲이사회·경영진의 독립성 ▲독자적 인사관리 및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 여부를 검토
- 투자자 보호
 -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이행하고 찬성 결의를 얻었는지 검토
 - 주주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 (이때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 제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래소 규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은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임.

금융위,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의무 모든 상장사로 확대...6월 30일부터 시행

6월 23일 금융위원회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보유현황·처분계획 및 이행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 이는 앞서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6월 30일부터 시행됨.

배경

- 지난 2월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¹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 보유·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상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의무화” 참고)
- 이후 지난 3월 금융위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회사가 임의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함. (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금융위, 3차 상법 개정 맞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공시 대상 모든 상장사로 확대” 참고)

개정된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

- 기존: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사 → 개정: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
- 자기주식 ‘보유현황’부터 ‘처분·소각 계획 및 실제 이행 현황’까지 전 과정 공시 강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관련 규정 삭제

-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소각 의무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함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정비

- 증권사 등과의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계약 종료·해지 시 즉시 반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소각 의무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함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매수한 자기주식 처분기간 변경

- 기존: 매수일로부터 5년 내 처분
- 개정: 주총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상의 보유기간(최대 5년) 내 처분²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법 시행일 이전에 직접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함

² 해당 기간 내 소각하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도록 규정 정비

- 자기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에 대한 균등 처분 방식 또는 기존 주주 외 제3자 처분 방식만 허용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매도 방식 관련 내용을 하위규정에서 삭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정비

-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소각기한 및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 등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
-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 목적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의 정합성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는 실제로 2026년 1~5월 자기주식 소각 규모가 43.1조원으로 전년 연간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내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힘.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확정...연결 10조원 이상 상장사 FY27 정보 법정공시 시작으로 2년 후엔 제3자 인증도 의무화 In Focus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8년(2027 회계연도에 관한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됨.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난 2월 발표된 초안 대비 강화된 ESG 공시 로드맵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최종 로드맵은 초안과 비교해 최초 공시 의무화 대상을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공시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공시 시기 및 의무화 대상	[1단계] '28년(FY27 정보)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107개사) [2단계] '29년(FY28 정보)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157개사) '28년~'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30년 2조원 이상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
공시 범위	재무보고상 연결 기준 (단, 첫 해에 한해 자산 및 매출이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면제)
공시 채널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예정)
면책	- 첫 3년 한시적 면책: 도입 후 3년 동안 공시 정보 전체 - 단, 시행 초기라도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행정제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 - 이후 제도적 면책: 예측정보, 추정정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¹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및 행정책임은 세이프 하버 조항²에 따라 사실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형사책임은 배제
제3자 인증	-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FY29)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규율체계를 설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범위·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을 설계할 방침 - 금융당국이 중심이 되어 직역 중립적인(즉, 특정 전문직군 등으로 한정하지 않음) 제도 설계 및 운영 예정(예: 인증기준, 품질관리기준 등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정)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예: 가치사슬 내 협력·거래업체, 해외 종속회사 중 현지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곤란한 경우, 협력업체 제공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² 세이프 하버(safe harbor)란 해당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근거가 되는 특정 행위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적시하는 조항으로, 로드맵에서는 예측·추정 등과 관련된 가정·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고,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해 성실하게 기재되었으며, 주의문구 등이 기재·표시되어 있을 것 등을 면책 조건으로 언급함.

구분	주요 내용 (계속)
스코프 3	-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인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은 '31년(FY30)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대상별로 3년 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
공시 기준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기반으로 마련된 KSSB 공시 기준 적용 -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다른 주제는 기업이 선택 공시 (추후 공시 주제 확대 논의 예정)

ESG 공시 로드맵과 함께 기업의 공시 이행과 글로벌 기후 및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시 이행 지원 및 공시 정보 활용 방안

- 기업 공시 실무 지원
 - [회계기준원]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모범관행을 도출하여 공개
 - [기후부]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 평가·분석 플랫폼 개발 ('28년 공개 예정)
- 공급망 데이터 산정·관리
 - [기후부] ▲주요 수출 업종별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¹ ('28년 완료 예정)
▲협력사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전과정목록데이터(LCI)² 구축
 - [산업부] 협력업체가 다수의 공시기업에 ESG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입력·다수대응 플랫폼' 개발
- ESG 종합 컨설팅
 - [산업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대상 컨설팅 추진
 - [금융위] 정책금융기관이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공시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ESG 컨설팅 및 자금지원 강화
- 공시 정보 활용 확대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활동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³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융위·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매년 12월 '이행 여부 점검결과' 공개" 참고)
 -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공급 시 공시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당정은 공시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함.

¹ ▲기완료: [이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행 중: 조선, 바이오 ▲예정: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무선통신, 섬유, 가전, 컴퓨터

² 전과정목록데이터(Life Cycle Inventories, LCI): 원료 채취, 수송, 생산,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탄소배출 등을 물질·공정 단위로 모듈화한 데이터

³ 7월 24일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개정](#)됨. 개정 코드는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요소 등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영사항 중 하나로 명시함. 이번 개정사항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행점검기준에도 반영되어 2027년 이행점검부터 적용될 예정임.

금융위, 금융권 AI 전환 추진 가속화...개정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발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전자금융업체 등 업계와 유관기관 및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I)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번 간담회는 AI 에이전트 도입 등 금융권 AI 관련 국내외 동향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권 AI 동향

- 결제·인증·데이터 등 금융 핵심 인프라의 AI 중심 전환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에이전틱 페이(agentic payments)¹ 등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책 마련 필요

업계별 AI 현황

- 참석한 업계 모두 대고객 서비스(챗봇)와 내부 업무 효율화에 AI를 활용 중이나, AI 에이전트 도입 수준은 업무 영역별로 차이가 존재함
 - 내부 업무: 고객정보 분석, 리스크·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AI 에이전트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외부 서비스: 망분리·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업종 분류 등 규제 제약으로 AI 에이전트 도입에 한계가 있음

유관기관·연구기관 의견

- 데이터 활용, 금융결제 및 보안 리스크 등 AI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에 업계와 공동 대응 필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감독 체계 재정비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데 따른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부 금융사에 적용 중인 보안용 망분리를 긴급 완화하고, AI 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및 데이터 가명처리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며, AI 에이전트의 책임·권한에 관한 규율체계와 AI 전용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한편,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그간의 AI 동향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AI 활용 원칙 및 위험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것임.² 개정 가이드라인은 업종·업무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결제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결제까지 수행하는 방식

² 금융위는 2021년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학습데이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함. (본 뉴스레터 2021년 8월호 “금융위,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시행 발표” 참고)

금융 AI 활용의 7대 원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7대 원칙	주요 내용
① 거버넌스	•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 (의사결정기구 및 전담 조직 구성, 내규 마련 등)
② 합법성	• 금융·인공지능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③ 보조수단성	•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업무의 보조 수단이므로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 (최종 책임 수행체계, 인적 개입 원칙 등)
④ 신뢰성	•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함
⑤ 금융안정성	• 인공지능 설계·학습 등 전 과정에서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⑥ 신의성실	• 인공지능 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⑦ 보안성	• 인공지능 활용 시 보안성 기준 및 점검·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함

개별 금융회사는 인적·물적 자원과 서비스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고영향 AI’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AI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됨.

시행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의문점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도 상시 운영될 예정임.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등 세부 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위, 금융회사 AI 보안 테스트 중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 면책 방침

미토스 등 프론티어 인공지능(AI)¹의 개발 및 도입으로 새로운 보안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AI 보안테스트 및 보안패치²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 제재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함. 6월 30일 금융위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면책 조치를 심의·의결하고 7월 2일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배경

- 최근 미토스 등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이 공개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이 고도화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 등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
- 금융위는 지난 5월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책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함. 또한 AI 보안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단'의 전문적 조언 등을 청취·반영해 방안을 확정함.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보안 목적 AI를 활용해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전파하는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제재 조치가 면책됨. 면책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면책 조치 주요 내용

면책 대상	• 보안테스트: 보안 목적 AI를 통해 상시적인 취약점·포트 스캐닝³, 자동화된 침투 시도 등을 실시하는 경우 • 긴급 보안 패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장비 변경: 금융위·금감원·금보원에서 전파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 긴급 보안 패치(운영체제·소프트웨어 등)를 실행하는 경우 등
면책 범위	• 기관·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신분제재와 과태료를 포괄함 • 단,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에는 면책 조치 미적용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Frontier는 '극한, 최첨단, 최전선'을 뜻하며, 프론티어 AI는 이전 세대 AI를 뛰어넘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을 보유한 AI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범용 AI로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²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보안패치를 할 경우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고, 각종 PC 오류의 원인을 제거해 줌.

³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의 포트(port)를 스캔하여 서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찾아내는 것. 해커들이 컴퓨터의 취약점을 찾기 위한 공격으로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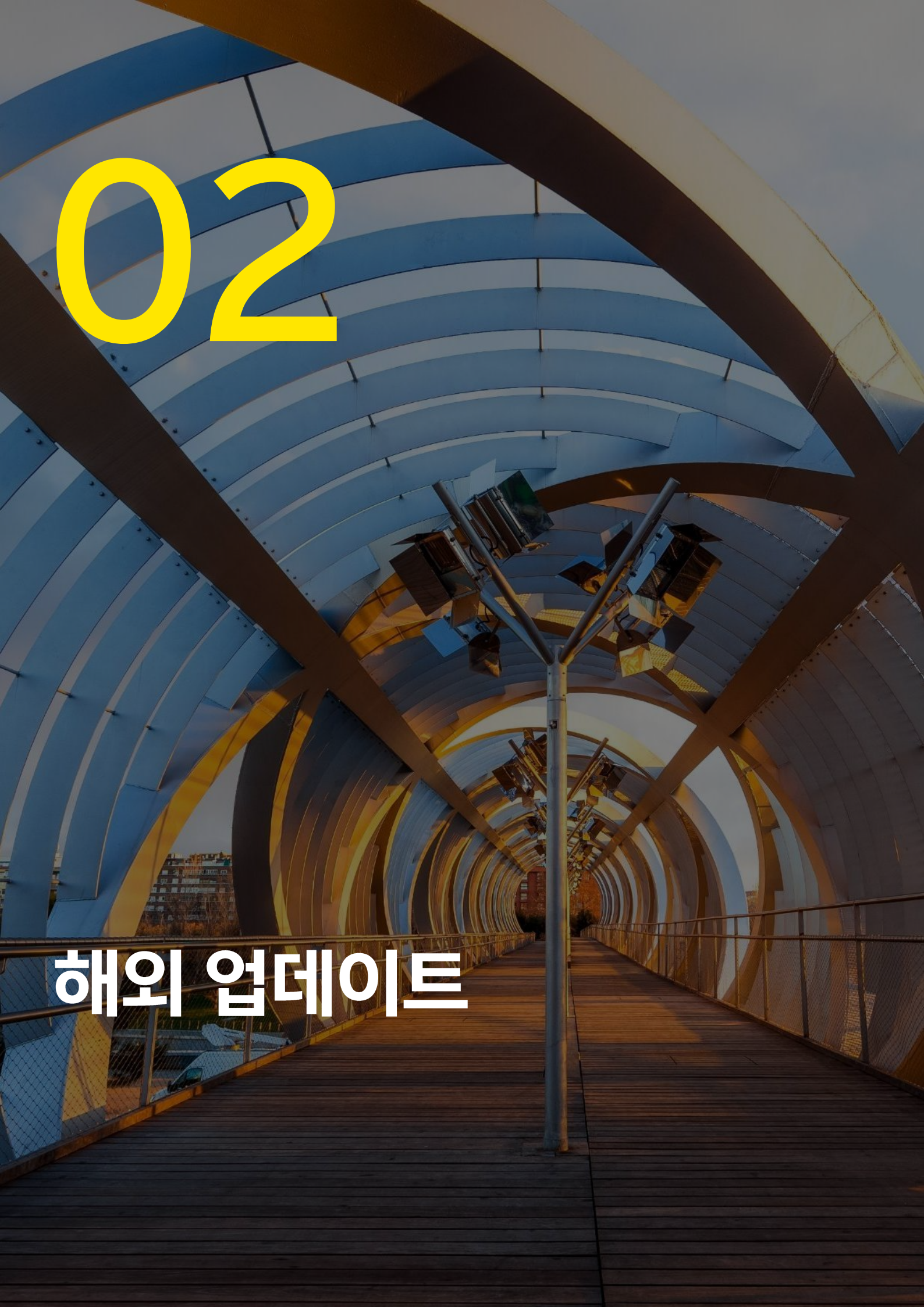
면책 조치 주요 내용

면책 요건	① '경미한' 전산장애 : 시행세칙 ¹ 의 제재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IT 사고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고의성이 없을 것 - 금전피해가 1억원 미만일 것 - 시스템 장애 시간이 4시간 이내일 것 - 유출된 고객정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며 1만 건 미만일 것	② 신속한 복구 수단 : 사전테스트 ² , 피해확산 방지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실시한 경우
		③ 소비자 보호 조치 : 대고객 사전 안내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 - 홈페이지, 문자(SMS) 등을 통해 보안테스트 또는 패치 일시·대상·내용·대체 서비스 경로 등을 고객에게 사전 안내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조치 마련·실시

또한 금융위는 보안 위협에 대응해 현장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을 마련해 달라는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 금보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임.

¹ 「금융회사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² 예) 검증 환경에서 패치 적용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영향도 분석 등



02

해외 업데이트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정 전면 폐지 제안..."SEC 법정 권한 벗어 나고 비용 대비 효익 낮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EC 등록기업의 증권신고서 및 연차보고서 내에 기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전면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8월 3일까지 [진행](#) 중임. 폐지 제안은 지난 5월 29일 [발표](#)됨.

배경

- '24년 3월 SEC는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공화당 집권 주 연합과 경제단체 등이 반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규정 시행을 유예하기로 **그해 4월 결정**함. (본 뉴스레터 2024년 3월호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정 확정...FY25부터 적용, Scope 3 공시 요구는 제외" 및 2024년 5월호 "미국 SEC, FY25 시행 계획 '기후 공시 규정' 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유예 결정" 참고)
- 이후 '25년 3월 SEC는 기후 공시 규정에 대한 반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변론 포기 의사를 통보함. (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미국, '27~'28년 시행 목표로 주 차원 기후공시법안 발의 잇따라...SEC는 연방 기후공시 사실상 포기" 참고)
- '25년 9월 법원은 SEC가 정식 절차를 통해 기후 공시 규정을 재검토하거나, 해당 규정에 대한 법적 방어를 재개할 때까지 심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림.

SEC는 규정 폐지를 위한 정식 절차를 개시하면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기후 공시 규정 폐지 근거

- **법정 권한 초과:** SEC에 부여된 법정 권한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규제임
- **정책적 이유:**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해당 규정은 불필요하며, 등록기업별 중요성(materiality) 중심의 공시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 증권 관련 연방 법률들의 정책적 목적을 크게 벗어남
 - 일부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편익 대비 기업과 주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함
 - '기업의 자본 형성 촉진', '상장 및 상장 유지 유인 제고' 등 SEC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한편, 지난해 SEC가 변론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당시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고 [보도](#)함.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새 지도부가 기후 공시 규정을 재검토하려는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 세레스(Ceres)는 "SEC가 변론을 포기한 것은 투자자 보호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음.

이번 폐지안 발표 후 한 에너지·환경정책 전문 매체는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기업의 기후 공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S&P 500 기업의 최대 80%가 이미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많은 기업이 영업 지역에 따라 EU, 미 캘리포니아 주 등의 기후 공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전 SEC 관계자는 상장기업들이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해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함.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관련 [성명](#)에서 "SEC 권한 행사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행 상장기업 공시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이번 임기 핵심 정책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기후 공시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후 공시 규정 폐지안은 6월 3일 연방관보에 [게재](#)됨.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국제기구 AI 기능 통합·협력 위한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 예정 In Focus

7월 6일과 7일 양일간 유엔(UN)이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대화(UN 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를 개최함. 유엔은 그동안 AI 거버넌스 체계가 AI 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정작 AI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들은 발언권을 거의 갖지 못해 불균형했다며,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함.

2024년 9월 채택된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에 기반해 설립된 이 플랫폼은 각국 정부, 기술 기업·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이 모범관행을 공유하고 국가 및 지역별 경험을 교환하며 AI 거버넌스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구축하는 장을 제공함. 제1회 회의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기회 및 영향 ▲AI 격차 해소 방안 ▲AI 거버넌스 관련 국제 협력 ▲국제 법에 부합하는 효과적 인간 감독을 통한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함.

한편,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통합하고 인프라 및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보건·식량 등 인류 공통의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AI 허브(Global AI Hub)'가 우리나라에 유치될 예정임. 올해 3월 제네바에서 6개의 유엔 기구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5월에는 여기에 3개 기구를 더한 총 9개의 주요 국제기구¹와 글로벌 AI 허브의 협력 범위 및 분야를 명시하는 공동성명을 선언함. 5개의 다자개발은행(MDB)²도 이 자리에 참석해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음.

이번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I 허브 협력 범위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개발도상국의 AI 도입을 촉진하며 AI 기술 표준·지침을 수립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참여 기관들이 각 기관의 임무 및 역할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및 이와 관련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AI 활용방안을 설계하도록 지원 - 기관·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하고 데이터, 모델 및 실증사례를 공유
실제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다양한 AI 도구·모델·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도출

AI 허브 운영 및 협력 체계

한국 정부	허브 유치국으로서 허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참여 기관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 설립 협정, 재정 규정 등에 따라 전문 지식 및 역량, 조직 내부에 축적된 경험 등을 공유하고 ▲한국 등의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²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EBI)

정부는 공동성명 선언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7월 초 '글로벌 AI 협력 방안 수립 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함](#).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글로벌 AI 허브' 운영 모델 및 자원 구조를 수립할 계획이며, 2026년 기획·협약, 2027년 시범 운영, 2028년 이후 본격 운영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함.



영국,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이르면 '27년 시행...SNS 아닌 서비스도 유해 기능은 별도 규제

6월 15일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함.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이용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함. 특히 SNS 이용 전면 제한이라는 일괄 규제를 넘어 라이브 스트리밍, 낯선 사람과의 소통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특정 기능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도 함께 도입할 예정으로, 게임 사이트¹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온라인 서비스 내 관련 기능에 적용될 예정임.

배경

- 영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SNS 이용 제한에 관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는데, 이에 응답한 부모의 90%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약 3분의 2도 16세 미만은 최소 일부 SNS라도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함.
- 영국은 이번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짐.

호주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규제

- '24년 11월 호주는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각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25년 12월 세계 최초로 모든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EU 등 전 세계적으로 SNS 연령 제한 도입 움직임 확산” 참고)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SNS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종합적인 조치로서, “온라인에서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경험하는지에 대응하는 체계”라고 강조함.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SNS 대신 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친구를 사귀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학습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규제안은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봄에 시행될 예정임.

SNS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의 디지털 접근 제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주요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 [EU](#): 지난해 11월 EU 의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음
- [미국](#): 기업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 [중국](#): 사이버관리국(CAC)이 스마트 기기, 모바일 앱, 앱스토어 등 앱 배포 플랫폼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모드’를 도입해 연령별 콘텐츠 추천, 이용시간 제한 등을 시행함
- [말레이시아](#): 2026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이용을 금지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제한되지 않음.

이 외에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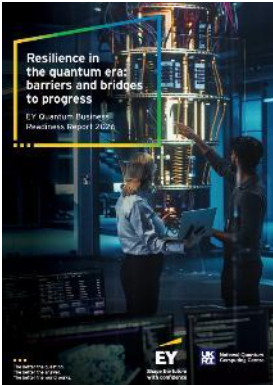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조항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현재 국회에는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인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03

주목할 간행물



EY: Quantum Business Readiness Repor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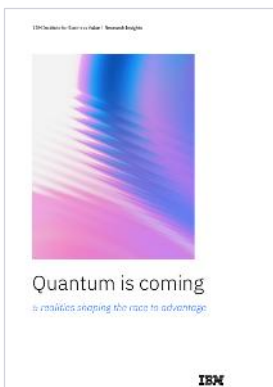
EY가 영국 국립양자컴퓨팅센터(NQCC)와 함께 영국 내 연매출 1억 5천만 파운드(약 3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영진, 이사진, 부서장 등 500명을 대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 인식 및 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전체 응답자의 87%는 향후 5년 이내에 양자 컴퓨팅이 자신이 속한 산업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한 비율은 35%에 불과해 양자 컴퓨팅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실제 대응 간 상당한 격차를 보여줌.

또한 산업 차원의 혁신은 가까운 시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5년 이내에 자사에서 양자 컴퓨팅이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했으며, 58%는 해당 시점을 2031~2035년 사이로 예상함. 기존 IT 시스템과의 통합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됨.

보고서는 기업들이 이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양자 컴퓨팅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외부 동향 모니터링 ▲내부 준비도 평가 ▲인재 확보 ▲활용 사례 탐색 ▲양자 생태계 이해 및 파트너십 구축 ▲전사적 기술 이해도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함.

IBM: Quantum is coming



IBM 기업가치연구소(IBV)는 2023년부터 기업들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준비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발간한 2025년 보고서는 28개국 14개 산업의 750개 기업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함.

보고서는 '양자 우위(quantum advantage)¹가 2026년 말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양자 준비도는 2023년 이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양자 역량 부족, 낮은 기술 성숙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함.

분석 결과, 준비도가 상위 10%인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기업의 양자 경쟁력은 ▲기술 성숙도와 함께 조직 준비도 제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병행 탐색하는 포트폴리오 전략 ▲양자 컴퓨팅과 AI의 융합 ▲양자 분야 인재 확보 및 역량 개발 ▲책임 있는 양자 컴퓨팅 내재화 등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함.

¹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그 어떤 고전 컴퓨터보다 정확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환점을 의미함.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